



	<b>Chap1, 상표의 유사 02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 ‘전체관찰의 원칙’, ‘요부관찰’</b>	<b>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b>
<b>제목</b>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b>판시사항</b>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b>판결이유</b>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전체관찰의 원칙’과 ‘요부관찰(요부 대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한 판례
- 특히 여러 구성 요소가 모두 식별력을 가진 경우, 복수 요부가 동시에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
- 상품 관계·거래실정을 고려한 식별력 인정 기준의 구체화
- 원심이 임의로 특정 구성 부분(CATALIC)만을 요부로 보아 유사성을 부정한 것을 바로잡으며 **요부 인정·대비가 오히려 전체관찰을 위한 엄정한 과정임을 확인**
- 결합상표 판단에서 유사성 판단의 출발점인 ‘요부’ 설정을 부적절하게 축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2) 사안개요**

- **당사자:** 피고인 1(회사 대표), 피고인 2 회사(화장품 제조·판매 법인)
- **피해 회사:** 화장품류 제03류에 등록된 상표 ‘Nudism’(영문 표장) 보유
- **행위:** 피고인들이 립스틱을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광고·판매
- **쟁점 발생 배경:**
  -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본질적 부분 ‘Nudism’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 결합상표에서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
  - 그 요부 간 대비로 상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3) 법리****● 쟁점 1: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 **원칙(전체관찰의 원칙):**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호칭·관념 기준으로 유사 여부 판단”
- **예외(요부관찰·요부의 대비):**  
상표 구성 부분 중
  -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 기억·연상을 유도하며
  - 그 자체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 **요부**
  - 전체관찰의 적절한 결론 도출을 위해 **요부를 먼저 대비하여 유사 판단**



- **요부 판단 요소:**
  - 주지·저명성 여부
  - 강한 인상 여부
  - 전체 상표에서의 비중
  - 상대적 식별력
  - 결합 상태·정도
  - 지정상품과의 관계
  - 거래실정
- **요부 없음** → 전체 대비로 유사 여부 판단

### ● 쟁점 2: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가 무엇인지

판례가 인정한 원문 요소:

- 'CATALIC':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
  - 'Narcisse': 수선화·신화 속 인물을 뜻하는 프랑스어
  - 'Nudism': '나체주의'를 뜻하며, 화장품 분야에서 관념이 쉽게 형성되는 용어 아님
  - 'Matte', 'Lipstick': 상품의 성질(질감)을 직감하게 하는 **비식별적 부분**
  - 'Holic': 'Nudism'을 강조하는 접미적 요소로 **식별력 미약**
- 결국 **CATALIC / Narcisse / Nudism** 모두 **식별력 有** → 모두 요부 인정

### ● 쟁점 3: 요부 대비 결과

- 등록상표의 표장(영문 Nudism)과
  - 사용상표의 요부 중 '**Nudism**' 부분은
    - 영문 철자 동일 → 외관 유사
    - 호칭 동일 ('누디즘')
- 표장 유사 판단

### ● 쟁점 4: 상품 동일성

- 등록상표 지정상품: 립스틱 등
  - 사용상품: 립스틱
- 동일·유사 → 오인·혼동 염려 인정

### (4) 특허법원(원심법원) 판단

- 사용상표는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특정
- 사용상표의 요부는 '**Nudism**'이 아니라 '**CATALIC**'
- 등록상표는 'CATALIC'을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음
-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 없음 → 무죄

### (5) 대법원 판단

- 결합상표 유사 판단 법리를 설시(전체관찰, 요부관찰, 요부 판단 기준 등)
- 사용상표의 'CATALIC', 'Narcisse', 'Nudism'은 모두 식별력이 있으므로 모두 요부
-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요부 중 'Nudism' 부분 대비 → 외관·호칭 유사
- 상품 동일·유사 → 오인·혼동 우려

- 그럼에도 원심이 비유사로 본 것은 상표권 침해 법리 오해
- 원심판결 파기·환송

#### (6) 결론

- **대법원:**
  - 'Nudism'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이며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 따라서 원심의 비유사 판단은 잘못
  - 원심 파기, 환송

#### (7) 한줄 키워드 요약

"결합상표에서 복수 요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요부 중 하나라도 등록상표와 유사하면 전체 상표는 유사로 본다."

#### (8) 추가 정리 포인트

- **요부는 단일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부정:** 여러 구성 부분에 식별력이 있으면 **복수 요부 인정 가능**
- **식별력 판단의 문턱을 명확히 제시:**
  - 상품의 성질·품질·용도를 직감케 하는지는 식별력 판단의 핵심
  - 'Nudism'처럼 의미가 존재하지만 상품 일반에서 흔히 쓰이지 않으면 식별력 인정
- **호칭 중심 판단 재확인:** 문자상표의 유사 판단에서는 호칭이 매우 중요
- **결합표장의 레이아웃도 고려:** 실제 표기 방식(4단 분리 등)을 고려해 각 부분의 독립성 판단
- **상표 실무에서 요부를 임의로 좁히거나 확장하는 판단 위험성 강조:** 전체관찰의 원칙 확립